工業団地 및 輸出自由地域内의 工場等 建築에 関한 規則

工業団地管理庁

工業団地内의 工場等 建築에 関한 施行要領이 75年 7月23日字로 폐지됨과 同時에 同日字로 同要領에 대치되는 工業団地 및 輸出自由地域内의 工場等 建築에 関한 規則이 商工部令 第446号로 制定 施行中에 있으므로 同 規則을 게제하오니 会員의 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編輯者 : 註〉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한 공업단지(이하"공업단지"라 한다)및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이하"수출자유지역"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공장·건물 기타 공작물(이하"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업단지관리청장등의 권한)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권한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수출자유지역 설치법 및 행정 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공업단지 관리청장이, 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는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이 행사한다.

제 3 조(공사착수) 공장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4 조(건폐율) ①공장 등 건축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6이하로 한다. 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 기업체(이하"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초년도의 공장 등의 건폐율을 10분의 3이하로 할 수 있으며, 대지의 공지의 대부분을 화물적치장·재생산용 폐품집하장·콘테이너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특수업종의 입주기업체 등에 있어서는 공장 등의 건폐율을 10분의 3이하로 할 수 있다.

②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장 등을 증축 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등은 그 공장 등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연차별 계획에 의한 증축예정 공장 등의 배치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지의 공지의 대부분을 화물적치장·재생산용 폐품집하장·콘테이너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특수업종의 입주기업체 등은 그 공장등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공지의 사용계획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계획은 3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 5 조(기숙사의 건축장소) 입주기업체 등이 그 종업원의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관리청장 (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는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지정하는 구역에 건축하여야 한다.

제 6 조(환경미화) 공업단지관리청장은 공업단지 또는 수출자유지역내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입주 기업체 등에 대하여 식재·화단의 설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가설 건축물) ①입주 기업체 등이 공업단지 또는 수출자유 지역에서 건축법 제4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공업단지 관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목적
2. 건축면적
3. 건축구조

②공업단지 관리청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17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항의 가설 건축물의 존속 기간을 정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